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책임제한사건 및 해사사건에 대한 중재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

■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19호, 제2201020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019호)	1
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020호)	2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재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27.
3. 회 부 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1019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 제3조의 경우 책임제한사건이 전국에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제3조 및 제30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를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 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020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7조, 제39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사건 등의 관할 및 「중재법」에 따른 해상분쟁 중재 관련 사항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하려는 것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고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 ----- ----- ----- ----- ----- ----- -- <u>해사전문법원</u> -----.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u>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u>	<삭 제>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생략)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u>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u>	② ----- <u>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7조(관할법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u>지방법원</u>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营业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居所(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居所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7조(관할법원) ① ----- ----- <u>지방법원·해사전문법원</u>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② (생략) <u><신 설></u>	⑤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할법원(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은 제외한다)은 해사전문법원을 말한다.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외국 중재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217조제2항,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법원은 해사전문법원을 말한다.
---	--

□ 「상법」은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¹⁾, 책임의 한도액²⁾, 책임제한을

- 1) 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 2)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①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5천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2.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하도록³⁾ 하였고(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1조⁴⁾).

□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서는 책임제한사건 관련 관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함(제2조).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500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33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250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00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6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12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 톤당 83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제776조(책임제한의 절차) ②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공고·참가·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4)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한채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불허를 청구하기 위한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함(제30조).

□ 한편,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국가기관인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말하고, 중재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심리와 최종적 판단은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가 하며,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배제됨(「중재법」 제3조 및 제6조5)).

○ 다만,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이나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결정 등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국가공권력을 활용한 임시적 처분의 집행 등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판단 또는 국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므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여할 수 있음(제7조6)).

5)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3.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제6조(법원의 관여) 법원은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 「중재법」 제7조에 따른 중재사건 관할법원 >

구 분	대 상	관할 법원
제1항	- 중재인 선정 및 중재기관 지정 -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결정 -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심사 -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지 관할 법원 - 중재지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 주소 또는 영업소 관할 법원 -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소 관할 법원 -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 관할 법원
제2항	증거조사	조사 지역 관할 법원
제3항	중재판정 원본 보관, 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지 관할 법원
제4항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 -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중재지 관할 법원, 피고 소유 재산 관할 법원,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관할 법원 등

- 6) 제7조(관할법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재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3.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재인의 권한종료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
 4.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
 - 4의2. 제18조의7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5. 제27조제3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
- ② 제28조에 따른 증거조사는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이 관할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재판정 원본(原本)의 보관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訴)
- ④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청구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법원
 2.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3. 피고 소유의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4. 피고의 주소 또는 영업소,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

○ 또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과 관련해서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7),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8)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제39조).

□ 개정안은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 의결을 전제로 책임제한사건, 해사분쟁에 관한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등 사항을 해사전문법원에서 관할하도록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및 「중재법」의 관할규정을 개정하려는 취지임.

- 7)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8)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 제27조(집행판결) ①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한다.
-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23호)은 전문법원으로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예정하고, 「상법」 제4편 제2장 제4절(해상보험)·제5편(해상) 및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선박의 도선, 예선, 건조, 수리, 매매 등과 관련된 다툼에 관한 민사사건, 해사중재합의서 효력승인신청사건 등 외국 중재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⁹⁾¹⁰⁾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제1016호)

제40조의10(심판권) ① 해사전문법원은 다음의 해사사건을 심판한다.

1. 「상법」 제4편 제2장 제4절 및 제5편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외국법이 준거법인 사건을 포함한다)
 2. 「선원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민사사건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 각 목의 민사사건
 - 가. 선박의 도선 및 예선과 관련된 다툼
 - 나. 선박의 건조, 수리, 매매 등과 관련된 다툼
 - 다.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물권과 관련된 다툼
 - 라.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과 관련된 다툼
 - 마. 선박의 항행 기타 관리 등을 위하여 공급된 물품 및 용역 등과 관련된 다툼
 - 바. 선박에 대한 보전처분, 강제집행 및 그에 부수하는 감수·보존처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툼
 - 사. 「해운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분야에서의 다툼
 - 아.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분야에서의 다툼
 - 자. 항만하역근로자 등 「항만운송사업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된 다툼
 - 차.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의 운용, 이용 및 그 밖에 선박투자 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다툼
 - 카. 마린나의 개발·관리·운영 및 해양레저 관련 분쟁
 - 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4.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한 외국 중재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 가. 해사중재합의서 효력승인신청사건
 - 나. 외국해사중재판정서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 다. 외국법원의 판결서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민사사건
- ② 해사전문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 등이 개정된다면 그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법률에 따라 해사사건으로 규정된 책임제한사건과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을 해사전문법원에서 심판하도록 관련 관할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에 따라 해사 전문법원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제한사건이나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신청사건을 현행과 같이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한다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¹¹⁾ 및 심판권 규정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관계자들에게 관할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해사사건 관련 집행사건이나 중재사건의 경우 해사전문법원이 관할하도록 할지는 해사분쟁과의 관련성, 절차의 전문성, 신속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¹²⁾

2. 해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해사전문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전문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23호)에서는 부산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제호)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12) 사건의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서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제40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해사사건에 해당되는 사건도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해사법원 설치 여부 및 설치 지역의 문제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해사사건의 수요, 해상 관련 산업 종사자의 소재, 해사사건 수요자의 접근성 및 설치에 따른 제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2020년 9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 회의에서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추진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어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해사법원의 설치 문제는 설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해사사건의 수요, 해상 관련 산업 종사자의 소재, 해사사건 수요자의 접근성 및 설치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설치 여부 및 위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5